보도시점 5. 28.(수) 석간 < 5. 28.(수) 06:00 >

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

- (투자)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
- (회수) 인수합병(M&A)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
- (재투자) 원활한 재투자 위해,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'중기부')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**'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', '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', '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' 개정안**에 대한 **행정예고**를 5월 28일(수)부터 6월 17일(화)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.

1.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

('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', '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')

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**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**에 대한 **제재 필요성**이 **제기** 되었다. 이에, **모태자펀드**('18) 및 **벤처투자회사·조합**('23)에는 **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**을 **반영**한 바 있다.

이번 개정은 **창업기획자** 및 **개인투자조합**에도 **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**하여,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·조합에 규정을 확대·적용하는 것이다.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,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.

2. 인수합병(M&A)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('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')

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**'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**('22)'을 통해 **인수합병(M&A) 벤처펀드**의 **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**(기존: 펀드 출자금

액의 20%)를 **발표**한 바 있다. 이에 따라, 현재 **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**에서 **위임**되어 있는, 중소·벤처기업 인수·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**상장법인 투자 한도**를 **60%로 규정**한다. 이는 인수합병(M&A) 펀드의 인수·합병 방식을 유연화하여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3. 원활한 재투자 위해,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

('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')

기존 벤처투자조합은 **출자금 중간배분 시**마다 **조합원 동의**를 **의무**로 하고 있어, **소액 회수금**의 출자자 배분에도 **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**을 **필요**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.

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**사전에** 정한 **출자금 배분 방식**이 **있는 경우**, **14일 이전**에 **조합원**에게 **사전보고 후 배분**할 수 있도록 한다. 이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,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김봉덕 벤처정책관은 "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,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며,

"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,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	책임자	과 장	곽재경	(044-204-7720)
		담당자	사무관	박혜정	(044-204-7722)
			주무관	모규영	(044-204-773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「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」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)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.	제5조(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)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. 다만,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.
[별지1]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제35조(배분원칙) ① ~ ③ (생 략)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배(배분)금액 및 시기는 조합원의 동의로 정한다.	[별지1]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제35조(배분원칙) ① ~ ③ 동일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.
제7조(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) ①·② (생 략) <신 설>	제7조(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영 제35조제6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”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.
제10조(행위제한의 예외) ①·② (생 략)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"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10조(행위제한의 예외)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"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영 제35조제7항제3호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

붙임 2 「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」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창업기획자의 등록 등) ② (생 략) 2. 창업기획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·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.	제3조(창업기획자의 등록 등) ② (생 략) 2. ---------- 준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투자 등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--.
제6조(행위제한 등) ① (생 략) ② 영 제16조제10호에서 "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란 영 제1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.	제6조(행위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<신 설>	1. 영 제1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
<신 설>	2. 투자계약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<신 설>	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경우
<신 설>	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
<신 설>	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
<신 설>	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

붙임 3 「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」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성) ① (생 략) ② 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”이란 「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」 제7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.	제3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성) ① (생 략) ② ---------- 영 제35조제7항제5호----------.
제10조(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) ① ~ ② (생 략) ③ 영 제8조제2항제8호에서 "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신 설>	제10조(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영 제8조제2항제8호에서 "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3.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(창업기획자인 경우에 한정한다)이 투자계약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가.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경우 나.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.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.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